



2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*

가.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(2017/4/21개정·시행)

1) 목적

- 계열사 투자 부적격 증권의 펀드 등 편입 제한 규제 등 2013년 4월 도입한 계열사간 거래집중 방지 규제의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효력을 연장하기 위함
- 코스피200 장내파생상품의 거래승수 인하(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방안 관련)에 맞춰 동 상품의 미결제약정 대량 보유 보고대상 기준을 조정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계열사간 거래집중 방지 규제 일몰 연장(부칙 신설)
 - 계열사간 거래집중 방지 규제의 일몰을 각각 2년씩 연장함

〈계열사간 거래집중 방지 규제〉

- 펀드 판매사의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 판매 한도 50%(~'17.4.22)
- 계열회사가 발행한 투자 부적격 증권 투자권유 제한(~'17.10.22)
- 계열회사가 발행한 투자 부적격 증권 펀드·신탁·일임 편입 제한(~'17.10.22)

*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

□ 장내파생상품 대량보유 보고 기준 조정(6-29조)

- 코스피200 선물·옵션 파생상품의 거래승수가 1/2로 인하('17.3월)됨에 따라 동 파생상품의 경제적 실질 등을 감안하여 미결제약정 대량보유 보고대상 및 변경 보고대상 기준을 2배 상향 조정

연구원 배승욱(02-3771-0867, bsu@kcmi.re.kr)